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86
----------	------

제출년월일 : 2002. 12./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소각장건립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과 금년말에 준공될 제2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 지역주민의 건강 문화증진에 기여하는 복합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안 1조, 2조)
- 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사항 및 취소사항을 규정함(안 제3 · 4조 · 5조 · 6조)
- 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라.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마.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 · 망실 ·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함 (안 제9조)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이하“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별표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①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 내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는 사용권 발매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2.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이상거주자)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4. 기타 체육진흥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제7조(운영·관리)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체육시설명의 명칭 및 위치중 다목적 운동장란과 테니스장란의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40의 1번지 제2공설운동장란을 삭제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92
입 안 자	환경보호과장	전 상 오
	환경시설담당	박 완 제
	담 당 자	이 능 우

주민편의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탁구장	탁구
	당구장	당구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숙소	합숙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40-1 번지 일원 (제2공설운동장)	축구장	축구 · 기타행사
	테니스장	테니스

실내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 용 료(1일1시간)		
		주3회	주5회이상	3개월이상
성 인	3,000	30,000	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청소년	2,500	25,000	4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어린이	2,000	20,000	3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비고>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 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를 말한다.
3. 3세이상 7세미만의 유아와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선금	
헬스클럽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에어로빅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비고〉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 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4]

탁구 및 당구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시간	1월선금	
탁 구 장	일 반	4,000	40,000	
	학 생	3,000	30,000	
구 분		사 용 료(10분당)		비 고
당 구 장		900		일반 · 학생구분 없음
〈비고〉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 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스쿼시	6,000	60,000	150,000	
〈비고〉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 사용(1일 1시간)				

숙소 및 강당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실	1주일이상	
숙 소	1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구 분	1일 1회(3시간)	1시간추가시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 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할인, 중·고등학생 10퍼센트 할인			

[별표 7]

제2공설운동장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사 용 구 분		이 용 료		
				개 인	축 구	행 사
축구장 (인조잔디)	2시간	평 일	주 간	-	40,000	80,000
			야 간	-	80,000	150,000
		토·공휴일	주 간	-	52,000	104,000
			야 간	-	104,000	195,000
테니스장	2시간	평 일	주 간	2,000		
		토·공휴일	주 간	2,500		

체육시설사용료

[인조잔디운동장]

○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20퍼센트, 야간을 3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파주시이외의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테니스장]

○ 테니스장의 1인 월 사용료는 20,000원임

○ 단체의 경우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월 20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1인 추가시 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 파주시이외의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 한다.